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지원 등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대해 공단 직원이 확인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관점에서 작성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하고 있어 의사 소견서는 등급판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나,

4.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의사소견서 민원사례, 다빈도 질의, 발급 매뉴얼 등에 대해 불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에서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관련 민원 사례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관련 다빈도 질의 1부.
 3.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장, 대한노인의학회장, 대한노인재활의학회장, 대한노인정신의학회장, 대한신경과학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대한치매학회장

대리

김연지

차장

이문희

부장

전결 11/07

양명해

협조자

시행 인정관리부-1827

2017.11.07

접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5층 /

전화 033-736-3857

전송 033-749-6375

/ kyj1212@nhis.or.kr

/ 공개

(0099-3857)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관련 다빈도 질의 안내

Q1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대상자 조회시 “다른 요양기관에서 작성중인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라고 알림창이 뜹니다. 왜 그런가요?
A1	다른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 작성 중 임시저장한 상태입니다.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중 『발급 관련 정보』 탭에서 다음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임시저장되며,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작성 중 인터넷 발급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 조회』에서 해당 대상자의 임시 저장건을 삭제해야 합니다. ⇒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알림창이 뜨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사소견서 발급 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포털발급번호)를 모두 입력하였으나 신청인 정보가 올바르게 없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A2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 중 잘못 입력한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성명의 “임”과 “림” 등을 구분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Q3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전에 미리 인터넷 발급할 수 없나요?
A3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 희망하는 대상자는 서면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Q4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사소견서 화면 이동 시 “다음 항목이 공란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알림창이 보입니다. 모든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A4	의사소견서 모든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필수 입력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공단 제출이 가능합니다.
Q5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사·한의사 성명과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니 “발급교육 이수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뜨고 다음페이지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 할 수 없는 건가요?
A5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치매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해야 발급가능 합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교육을 이수하였으나 교육이수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뜬다면 이수증(수료증)을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전송하시고 전화주시면 이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Q6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사소견서 발급을 할 수 없나요?

A6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은 할 수 없으나, 의사소견서는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관련 민원 사례

사례 1

거동 불편으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전 진료내역이 없어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이 되지 않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로 이전 진료내역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141호, 2017.8.8.)'에 따라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며, 초진 환자가 의사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내원 당시의 상태상에 따라 진찰하고 보호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작성지침[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 (2008.4.14.) 참고

사례 2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찰 등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으나 공단에서 안내해 준 발급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소견서 발급비용 외 별도 비용을 더 내는 것이 맞나요?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141호, 2017.8.8.)' 제78조에 따라 발급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작성 가능한 의사소견서 항목을 진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검사 등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하며 *등급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공단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니 예상된 등급이 아니었습니다. 등급판정을 제대로 한 것이 맞나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에는 누구도 등급을 확신할 수 없으니 예상 등급 안내를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